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

■ 공정거래법

거래강제행위

11. 16.

(주)케이티뮤직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2009서경4129)

■ 위반내용

피심인은 자신의 모회사인 케이티의 QOOK TV 등 서비스 가입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2009. 8. 13.~10. 30. 동안 모든 임직원들이 이용하는 전자시스템 공지사항란에 〈표 5〉 2009. 8. 13. 전자시스템 공지사항(소갑 제2-1호증)과 〈표 6〉 2009. 9. 14. 전자시스템 공지사항(소갑 제2-2호증)과 같은 내용을 게재하였다. 피심인은 2009. 9. 16. 자신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 13층 뮤즈홀에서 전 직원을 참석시켜 QOOK TV 등 구입·판매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심인은 전 직원에게 QOOK TV 상품 가입을 독려하였는 바, 이는 이하의 증거를 통하여 확인된다. 경영전략실장 ○○○은 2009. 8. 17. 메일에서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제가 직접 다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KT뮤직 직원들은 꼭 가입을 하셔야 하며”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2009. 8. 24. 메일에서는 “금주 목요일부터는 미가입자에게 직접 미가입 사유를 파악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직원들로 하여금 QOOK TV 상품 가입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렸다. 한편 인사팀장 ○○○는 전직원에게 발송한 2009. 8. 25.자 이메일에서 “금주 목요일부터는 신청/미신청 현황 명단을 전 직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직원 실적 비교를 통하여 직원들에 대한 부담감을 높이고자 하였고, 대표이사 ○○○는 같은 날 임원 등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각자의 소속 직원들의 가입신청을 독려하고 실적을 쟁기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대표이사 ○○○는 2009. 10. 8. 이메일에서는 전직원들이 모두 QOOK TV 등 서비스 가입을 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팀장 및 임원들은 대표이사 자신의 실적을 벤치마킹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피심인은 2009. 8. 11.~8. 12. 기간 동안 모든 직원들의 인터넷 TV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 회사를 파악하여 각 팀장들에게 팀별로 명단을 통지하였다. 피심인은 2009. 8. 27.~10. 29. 기간에 부서별 및 개인별로 작성한 “QOOK TV 가입현황표”를 전 직원에게 거의 매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피심인의 인사팀장 ○○○는 2009. 10. 20. ‘QOOK TV 프로모션’과 관련한 개별 실적을 개인별 인사평가에 연계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피심인의 경영전략실장 ○○○은 2009. 10. 20. ‘QOOK TV 프로모션’과 관련한 실/본부 실적을 평가에 반영시키는 계획을 피심인 소속 본부장과 팀장들에게 이메일로 통지하면서, 해당 팀장들이 직원들을 독려하도록 지시하였다.

임원이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하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직원이란 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 외의 자를 말한다. 임직원에는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의 형태를 묻지 않는다. 한편,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자기의 임직원에게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떤 임직원이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자인지 여부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영업 및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피심인은 자기의 임직원들에 대하여 계열회사인 케이티의 서비스인 QOOK TV 등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였던 바, 피심인은 그 사업으로 케이티 서비스의 판매업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구입·판매 행위를 강요받은 피심인의 임직원들도 QOOK TV 등의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임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4월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의 경우 피심인은 기업집단 케이티 소속 회사로서 당시 명칭은 주식회사 케이티에프뮤직이었으며 케이티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피심인이 자기의 임직원에게 구입·판매를 강제한 QOOK TV 등은 케이티의 서비스이므로 바로 피심인의 계열회사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사원판매행위에 해당되려면 사업자가 자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자기 회사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적어도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자기 회사 상품의 판매량을 할당하고 이를 판매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상품의 구입 부담을 지우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임직원에게 구입이나 판매를 강제하는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업자 측의 구입·판매 목표량의 설정과 할당, 목표 미달시 제재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성의 유무를 판단한다.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볼 때, 피심인의 행위는 자신의 임직원에 대하여 계열회사의 상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판단된다. 첫째, 대표이사 등이 직접 직원들에게 매달 한 개씩 구입·판매하라고 독려하고 팀장·본부장들에게도 자기를 벤치마킹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해당 임직원들에게는 구체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둘째, 피심인이 개인별 일일판매현황을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매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경영전략실장이 서비스 미가입 직원들에게는 직접 미가입사유를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실적이 매일 다른 직원들의 실적과 비교되고 상품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직접 경영전략실장에게 소명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직원들은 상품 구입 및 판매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강제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경영전략실장과 인사팀장이 각각 본부장·팀장 및 전 직원에게 매일을 보내 QOOK TV 상품 구입 및 판매실적을 부서 성과평가 및 개인별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통지하였는 바, 실적을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는 통지는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원판매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① 사원판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② 부도 발생 등 사원판매를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처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원판매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피심인에게는 사원판매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심인은 임직원에 대하여 가지는 고용관계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계열회사의 상품의 구입·판매를 강제함으로써 경쟁사의 상품을 구입할 가능성을 제한하였다. 특히 상호출자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이 그 경제력을 이용하여 계열회사를 동원하여 사원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이러한 폐해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음악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자인 피심인이 계열회사인 케이티의 서비스를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이나 소비자후생이 특별히 증대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강제행위 중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치내용

피심인은 자사 소속 임직원에게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케이티의 IPTV·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서비스 등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

부당한 공동행위

11. 22.

5개 신용정보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0카총2142)

■ 위반내용

2006. 4. 18. 피심인들의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실무자들은 서울 아현동 소재 식당 태능숯불갈비에서 모임을 개최하였다. 이 모임에서 피심인 한국기업데이터 팀장 ○○○은 사본발급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공개하였고, 이에 따라 나머지 피심인들의 실무자들도 인상방법과 인상 시기는 자율로 하되, 어떤 방법으로든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확인된다. 첫째, 2006. 4. 18. 나이스디앤비가 작성한 ‘평가사 모임’ 관련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2006. 4. 18. 피심인들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모임이 있었고, 이 모임에서 한국기업데이터가 사본발급수수료 인상계획을 발표하였다. 둘째, 2006. 4. 21. 한국기업데이터가 작성한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 관리 신용평가사 협의사항’ 관련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피심인들 모두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셋째, 2006. 4. 18. 피심인들의 실무자들은 평가사 모임에서 수수료를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는 당시 이 모임 참석자의 진술 등에서 확인된다. 피심인들은 2006. 4. 18. 합의에 따라 기존의 15만 원인 평가수수료를, 부가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평가수수료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20만 원으로 수수료를 인상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시기와 실행방법은 피심인 별로 달리하였다.

2007. 1. 17. 피심인들의 실무자들은 서울 여의도동 소재 중국음식점 차이홍에서 당시 20만 원인 평가 수수료를 2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확인된다. 첫째, 2007. 1. 15. 나이스디앤비 팀장 ○○○가 나머지 4개 피심인들의 실무부장에게 보낸 메일에 의하면 “2007. 1. 17(수) 11:40 여의도빌딩의 중국집 ‘차이홍’에서 미팅 후 식사”를 제안하고 있는 점에서 피심인들 간에 모임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둘째,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자들이 2007. 1. 17. 위 중국음식점 차이홍에서 평가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는 당시 이 모임 참석자의 진술 등에서 확인된다. 피심인들은 2007. 1. 17. 합의에 따라 기존의 20만 원인 평가수수료를 25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구체적인 실행 시기는 피심인별로 달리하였다. 다만, 사본발급수수료 · 전송수수료 등 부가수수료는 위 인상 시점 전 · 후에 폐지되었다.

2008. 2. 27. 피심인들의 실무자들은 여의도동 소재 한국신용평가정보 8층 회의실에서 기존 25만 원인 평가수수료를 최저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매출액 또는 자산규모별로 차등화 하여 2008년 7~8월 중에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심인들의 실무자들은 매출액 또는 자산규모별로 평가수수료를 차등화하자는 합의내용의 실행을 위하여 2008. 7. 10. 모임을 갖고 상호 차등화 방안을 공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확인된다. 첫째, 한국신용평가정보 차장 ○○○가 2008. 2. 27. 4개 피심인의 실무자들에게 보낸 ‘신용조회 5사 회의록’에는 평가수수료 인상에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둘째, 한국기업데이터 차장 ○○○가 2008. 7. 10. 같은 회사 부장 ○○○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당일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과 각 사별 차등화방안을 서로 간에 공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피심인들의 실무자들은 2008. 2. 27. 평가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는 당시 이 모임 참석자의 진술 등에서 확인된다. 피심인들은 2008. 2. 27. 평가수수료를 최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평가수수료 체계를 매출액 또는 자산규모별로 차등화하기로 한 합의를 실행하였다.

다만 한국기업데이터는 합의에 참여하였으나 합의를 실행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대상인 수수료는 의뢰인의 재무상태를 평가한 용역서비스의 제공 대가로 주어지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에 해당되고, 또한 합의내용이 평가수수료의 인상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격의 '결정·유지 및 변경'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위의 행위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수료를 3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합의한 내용대로 인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 위의 위법 성 성립요건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시장에서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해당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감소시켰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피심인들의 위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피심인 한국기업평가, 피심인 나이스디앤비, 피심인 한국신용평가정보, 피심인 서울신용평가정보는 한국기업데이터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수수료를 단순히 추종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시장에서, 평가수수료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시 고객의 이탈을 우려하여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평가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피심인들을 주도자와 단순가담자로 구분하여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기업데이터를 제외한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한국기업데이터를 단순히 추종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심인들은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시장에서 평가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해당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및 구시행령 제61조 및 과징금부과고시 Ⅲ. 2. 다. (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피심인들의 위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1조를, 과징금에 대해서는 법 제22조를 각 적용하는 한편, 자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치내용

피심인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 피심인 주식회사 나이스디앤비, 피심인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 피심인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는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관련 수수료를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 피심인 주식회사 나이스디앤비, 피심인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 피심인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는 과징금 41,000,000원, 91,000,000원, 61,000,000원, 74,000,000원을 각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피심인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면제한다.

12. 1.

5개 메추리 부화장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사단법인 한국메추리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2010카조2673, 2679)

■ 위반내용

4개 부화장 대표들은 2009년 3월 말경 유선 통화 등을 이용하여 유추 가격을 2009. 6. 1.부터 22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하자고 합의한 사실이 있다. 상기 합의 내용은 4개 부화장 모두가 그대로 실행하지는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

않았지만, 거래의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한편, 5개 메추리 부화장 중 용궁농장의 경우 상기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2009월 6월 중순부터 2009년 1월 중순까지 4개 부화장 대표 및 메추리 협회 협회장 문○○은 천안에 위치한 '태하농원' '신토불이' 등 식당에서 수차례 모임을 가진 후 최종적으로 2010. 2. 9.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날인하고 같은 날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1009-11 범조타운빌딩에 소재한 공증인이 법무법인에서 상기 합의서를 공증한 사실이 있다. 한편, 용궁농장 대표 김○○는 상기 2010. 2. 9.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2010. 2. 23.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에서 동일한 합의서를 메추리 협회와 작성 및 날인하고 공증한 사실이 있다. 다만, 피심인 5개 메추리 부화장 및 메추리협회는 2010. 6. 24. 자진하여 상기 '합의서'를 파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 합의의 실행시기와 관련하여 메추리협회와 5개 부화장 간 합의서에는 "16. 2010년 5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적어도 2010. 3. 30. 이전부터 실행되었음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정된다. 첫째, 2010. 4. 21. 현장 조사 시 발견된 "분양 지시서 메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 2010년 3월 말 이전에 메추리협회가 메추리 농장으로부터 분양신청을 접수받아 메추리 부화장에게 분양 요청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신애 농장, 천안 부화장, 예산 부화장 및 메추리협회 협회장 문○○이 진술을 통해 상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용궁농장을 제외한 피심인 4개 메추리 부화장이 유추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에 해당되며, 이는 위의 행위 사실에 의해 충분히 인정된다. 피심인 5개 메추리 부화장이 메추리협회와 2010. 2. 9., 2010. 2. 23. 작성 및 공증하여 메추리협회를 통해서만 유추를 농장에 분양하고, 신규농장에는 유추를 분양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는 위의 행위사실에 의해 충분히 인정된다. 피심인 4개 메추리 부화장은 전국 메추리 분양 시장에서 약 70% 점유율을 차지하는 사업자들로써 유추 분양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경쟁으로 인한 자신들의 이익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써 메추리 유추 분양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메추리 생산농장은 통상적으로 자기와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메추리 부화장을 이용하거나 생산시설 등이 양호한 메추리 부화장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양질의 메추리 유추를 공급받아 이를 생산·판매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5개 메추리 부화장이 메추리협회를 통해서만 유추를 농장에 분양하고, 신규농장에는 유추를 분양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는 메추리 유추 분양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피심인 5개 메추리 부화장은 위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심인 4개 메추리 부화장의 위의 행위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5개 메추리 부화장의 위의 행위는 '거래 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서 그 합의는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메추리협회는 2010. 2. 26.에 구성사업자인 메추리 농장에게 <농장주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여, 24구 기준 16,000원, 11구 기준 18,000원 이하로 판매하는 농장 및 덤펑 판매하는 농장에 대해 신고를 종용하면서 이들에 대해 불이익의 부여할 것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2010. 2. 22. 캡슐 제조 사업자인 ○○○(○○산업 대표, 이하 "○○산업"이라 한다)과 메추리 협회를 통해서만 캡슐을 주문받아 공급하고 메추리 농장으로부터는 주문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또한, 메추리 부화장과 '메추리협회를 통해서만 유추를 주문받아 공급하고 메추리 농장으로부터는 주문 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그 후 피심인은 2010. 2. 26., 2010. 3. 10., 2010. 4. 10. 메추리 농장에 발송한 공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추리 농장이 유추 및 캡슐 주문 시 자신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5개 부화장 및 성신산업이 아닌 다른 메추리 부화장 및 캡슐 제조사와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한 사

실이 있다.

피심인이 메추리알의 판매 기준가격과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준다고 고지한 행위는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메추리 농장이 판매가격 결정할 때, 피심인이 통보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거나 적어도 이를 고려하여 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심인이 유추 및 캡슐 주문서 자신을 통하여 5개 메추리 부화장 및 ○○산업만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시 유추 및 캡슐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등 불이익을 고지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인 메추리 농장이 유추 및 캡슐 주문서 피심인이 통보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거나 적어도 이를 고려하여 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메추리 농장은 독립된 사업자들로서 시장의 수급 상황이나 각자의 영업여건,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메추리 알 판매 가격, 메추리 부화장 및 캡슐 제조사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 전국적 메추리 농장의 약 50% 이상이 피심인의 회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메추리알의 판매 기준가격과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준다고 고지한 행위는 구성사업자간 가격경쟁이 감소 또는 소멸됨으로써 메추리 알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메추리 부화장 및 캡슐 제조사 선택에 제한을 하고 이를 어겼을시 공급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고지하는 행위는 구성사업자인 일반 메추리 농장의 거래상대방 선택을 제한한 행위로서 메추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위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심인 용궁농장을 제외한 4개 메추리 부화장의 위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용궁농장을 포함한 5개 메추리 부화장의 위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메추리협회의 위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각각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치내용

피심인 박○○, 이○○, 김○○, 김○○은 메추리 유추 분양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메추리 분양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 박○○, 이○○, 김○○, 김○○는 사단법인 한국메추리협회를 통해서만 유추를 농장에 분양하고, 신규 농장에는 유추를 분양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메추리 분양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 사단법인 한국메추리협회는 메추리알의 판매 기준가격을 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메추리 알 판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 사단법인 한국메추리협회는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유추 및 캡슐 주문서 자신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특정 메추리 부화장 및 캡슐제조사가 아닌 다른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 메추리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

과징금 재산정

11. 5.

2개 합성고무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주)씨텍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2010카조1843)

■ 위반내용

주식회사 씨텍,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각각 “씨텍”, “금호석유화학”이라 한다)는 2000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 중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에 대한 판매가격(인상폭) 합의 후 이를 기준으로 다른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인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에 대한 합성고무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씨텍과 금호석유화학은 2000년 2~3월경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에 대한 합성고무의 판매가격 인상폭 (\$70/MT)과 인상방안에 관하여 서로 합의하였다. 이후 양사는 2000. 3. 8.부터 각 타이어 제조업체에 가격인상을 통보하였고, 최종적으로 넥센타이어에 대해서는 2000년 3월 \$70/MT(인상폭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는 2000년 8월 \$15/MT씩 인상하였다. 씨텍과 금호석유화학은 2001년 2월 말~3월 초에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에 대한 합성고무 판매가격을 전체적으로 최소한 \$70/MT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양사는 2001. 3. 15.에 한국타이어에 가격인상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2001년 5월~6월 사이에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에 대해 각 품목별로 \$40/MT씩 인상하였다. 씨텍과 금호석유화학은 2002년 3~4월경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에 대한 합성고무 판매가격을 처음에는 최소 \$100/MT 인상을 목표로 가격인상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가격협상 과정에서 목표가격을 수정하여 최소한 \$70~\$80/MT은 인상할 것을 서로 합의하였다. 이후 한국타이어에 대해 양사는 2002. 4. 4. 자 가격인상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2002. 5. 1.부터 \$60~\$70/MT의 가격인상을 하였다. 넥센타이어에 대해서는 금호석유화학은 2002. 4. 18., 씨텍은 2002. 4. 22.에 각각 \$100/MT의 가격인상을 하였다.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는 금호석유화학이 \$60/MT 수준의 가격인상을 하였다. 씨텍과 금호석유화학은 2002년 8월 하순경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에 대한 합성고무 판매가격을 전체적으로 \$150~\$200/MT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는 금호석유화학이 2002. 9. 2., 씨텍이 2002. 9. 10.에 가격인상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2002년 10월부터 \$70~\$120/MT의 가격인상을 하였다. 넥센타이어 및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가격인상을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2007. 6. 22. 전원회의 의결 제2007-328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씨텍과 금호석유화학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전체 5,679백만 원, 씨텍 651백만 원)을 의결하였다.

씨텍은 원심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며 원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00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기간 동안 4차례(2000년 1차, 2001년 2차, 2002년 상반기 3차, 2002년(하반기 4차) 가격담합은 ‘기본적 원칙에 대한 합의’ 증거가 없어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각각 별개의 행위이며, 따라서 위원회 처분시점(2007. 6. 22.)을 기준으로 1차, 2차 가격담합은 처분시효가 경과되어 위원회의 씨텍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확정되었다(서울고법 2008. 8. 28. 선고 2007누27105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두16421 판결).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씨텍의 4차례 가격담합 중에서 1차 및 2차 가격담합을 제외한 3차 및 4차 가격

담합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3차 및 4차 가격담합에 대한 시기와 종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즉, 이 사건 관련 가격 3차 및 4차 담합의 각 시기는 씨텍과 금호석유화학이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합성고무의 판매가격 인상폭과 인상방안을 합의한 일자로서, 원심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국내타이어업체에 대한 합성고무 판매가격 인상공문 발송일 또는 가격인상일로 보며, 각 종기는 3차의 경우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4차 가격담합이 시작되기 직전인 2002. 9. 9.로, 4차 담합의 경우 위원회 원심결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2003. 3. 31.로 보기로 한다. 따라서 원심결 3차, 4차 각 가격담합 시기는, 씨텍과 금호석유화학이 국내 타이어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합성고무의 판매가격 인상폭과 인상방안을 각 합의하고 각 실행일로 최초로 나타나는 일자로, 3차 가격 담합의 경우 2002. 4. 4.이고, 4차 담합의 경우 2002. 9. 10.이며, 각 가격담합의 종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차 가격담합의 경우는 2002. 9. 9.이고, 4차 가격담합의 경우는 2003. 3. 31.이다. 위와 같이 3차 가격담합과 4차 가격 담합은 판례의 취지에 따라 별개의 행위로 보더라도, 3차 및 4차 가격담합 사이에는 담합기간의 공백이 없이 3차 가격담합이 종료된 직후에 바로 4차 가격담합이 시작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법위반행위 기간은 3차 및 4차 가격담합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2002. 4. 4.부터 2003. 3. 31.이다.

씨텍의 법위반행위 기간에 해당하는 관련매출액은 32,905,550천 원이며, 기타 원심결과 달라지는 사정은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기준율(3%), 과징금 감경률(80%)은 원심결의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여 그 결과 산정된 최종 부과과징금액은 197,000,000원(백만 원 미만 절사함)이다.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한다.

■ 조치내용

피심인은 과징금 197,000,000원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1. 22. 엘지전자피씨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2010서경1805)

■ 위반내용

피심인은 2007년 3월경 대리점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이 제품 판매시 준수해야하는 최저판매가 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2007년 3월 21일 엘지전자로부터 통지받은 최저판매가를 구성사업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피심인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수시로 대리점협의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최저판매가 준수여부 점검 및 위반 사업자에 대한 마일리지 삭감, 역량평가 등급 강등, 벌금 부과 등의 구체적인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다. 피심인은 최저판매가 제도의 이해를 담보하기 위해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5개 상가대리점은 각각 500만 원씩 2,500만 원을, 소매 영업만을 하는 10개 IT대리점에는 각각 200만 원씩 2,000만 원을 가입비 명목으로 징수하여 이 중 일부를 가격점검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이 가격 점검 활동을 통해 최저판매가 이하로 판매되는 제품을 매집하여 신고해 오면 엘지전자에 제품일련번호(Serial Number)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출하처 확인요청을 하고, 출하처 확인을 통해 최종 확인된 위반 구성사업자로부터 벌금을 징수하였다. 피심인 및 엘지전자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7년 3월부터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

2009년 2월까지 매월 엘지전자가 정한 노트북PC 가격을 엘지전자 또는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였음이 인정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최저판매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점, 최저판매가를 준수하지 아니한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엘지전자에 이를 통보하는 등 실제로 불이익을 준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최저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전문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업자가 정한 최저 재판매가격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브랜드내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엘지전자 노트북PC 시장점유율이 2009년 기준 22.9%로 2위인 점, 피심인으로 인하여 엘지전자의 노트북PC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시작되어 가격 경쟁이 직접적으로 제한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는 다수의 경쟁사업자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향후 법위반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법 27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8조 제1항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별표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Ⅲ. 1. 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 및 제28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 조치내용

피심인은 자신의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사건 외 엘지전자 주식회사가 정한 노트북PC 제품의 최저판매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재판매가격 유지를 하게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과징금 2,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규모소매업에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11. 15.

(주)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0가우1778)

■ 위반내용

피심인은 2008. 4. 1 ~ 2008. 12. 31.의 기간 동안 00000 대리점 등 94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납품업자들은 대부분 피심인과 같은 구매력을 가진 대형 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함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둘째,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의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셋째, 비록 피심인이 운영하는 매장 수(직영점 28개) 및 매출액 등에서 업계 영향력이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상위권 대규모소매업자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나, 국내 상업유통에 있어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어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납품업체들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마트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가 어렵다. 넷째, 대형마트의 특성상 다품종의 생활용품, 가공식료품, 야채·과일 등을 위주로 판매함에 따라, 이러한 상품을 제조·납품하는 납품업자의 경우 그 규모는 작으나 경쟁업자 수가 많아, 납품업자는 다른 대규모소매업자보다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마트라도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며, 거래 단절시 거래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회수가 곤란한 점 등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 다섯째, 법원에서도 “상대방보다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적·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상대적 우월성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피심인은 위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4. 1.~2008. 12. 31.의 기간 동안 베지밀 역곡대리점 등 94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조건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피심인이 거래조건을 납품업자에게 서면계약서를 미교부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첫째, 대규모소매업자가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납품업자와 거래할 경우 납품업자는 현실적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거래형태, 거래가격, 거래기간, 납품조건, 대금 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및 판촉비용의 분담 등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고, 향후 분쟁 발생시 소송 제기 등 사후적 권리구제의 실현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둘째, 피심인은 2008. 4. 1.부터 2008. 12. 31.까지 94개의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는데 피심인이 비록 대규모소매업 분야에서 그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거래하는 납품업자 특성상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각종 생활용품, 식료품 등을 제조·납품하는 중소기업임을 감안할 때 거래상 지위가 있으므로 서면미교부에 대한 다른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되어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피심인은 2008. 1. 1.~2008. 12. 31.의 기간 동안 ○○○○○ 등 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총 16,563천 원 상당의 매입상품을 유통기한 경과, 매출 부진, 점포 리뉴얼 또는 가위, 코너정리대 등 계절용품이 아님에도 계절용품이라는 이유로 납품업자로부터 반품요청서를 받고 반품하거나, 계절용품인 선풍기 및 전기요를 납품일로부터 10개월 이상이 경과한 다음 해 5~7월과 12월에 반품한 사실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에 대해서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심인은 위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로 매입한 상품을 유통기한 경과, 매출 부진, 계절상품(계절상품이기는 하나 해당 계절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계절상품, 계절상품이 아님에도 계절상품으로 분류된 상품), 점포리뉴얼을 이유로 한 반품요청서를 납품업자로부터 받아 일부 상품을 반품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이 직매입거래로 매입한 상품을 반품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첫째,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 형태로서 대규모소매업자가 자기의 영업전략에 따라 매입 및 판매를 하므로 재고관리에 대한 책임을 대규모소매업자가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반품은 불가능함이 원칙이다. 둘째, 피심인이 반품사유로 든 유통기한 경과, 매출부진, 점포리뉴얼은 피심인에게 판매와 재고관리 및 점포리뉴얼의 책임이 있으므로 납품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피심인이 계절용품으로 분류한 채칼, 세탁볼, 가위, 코너정리대 등은 계절에 상관없이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특정계절에만 판매되는 상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계절용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게 반품하였다. 그리고 여름계절용품인 선풍기와 겨울 계절용품인 전기요를 각각 여름 및 겨울철이 10개월 지난 다음 해 5~7월이나 12월에 반품한 것은 계절용품을 납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

품일로부터 정당한 기간 내에 납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이 든 반품사유나 계절용품을 정당한 기간을 초과하여 반품한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의 예외적인 반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피심인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반품요청서를 받아 제품을 반품하였다 하더라도 피심인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구매사유로 발생한 재고부담이라는 손해를 납품업자로 하여금 대신 부담하도록 하는 불이익을 준 행위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피심인은 ○○(주)와 2008. 1. 1.~2008. 12. 31.의 기간 동안 직매입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규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200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계약이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인 2009. 5. 1.자로 계약기간 1년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장려금을 매월 상품 매입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9%에서 20%로 1%p 인상함으로써 ○○(주)에게 2009. 5. 1.부터 2009. 12. 31.까지 총 144천 원의 판매장려금을 추가로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에 대해서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심인은 위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주)와 납품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 자동연장 조항에 의하여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계약기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1.자로 판매장려금을 매월 상품매입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9%에서 20%로 1%p 인상하는 내용의 서면계약서를 새롭게 체결하였다.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인 ○○(주)와 납품거래를 하면서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을 변경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첫째, 납품업자들은 계약 체결 당시 정한 판매장려금이 계약기간 동안에 지속될 것으로 신뢰하고 이에 따라 경영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을 인상하게 되면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와 함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둘째, 피심인은 판매장려금을 인상하면서 납품업자와 장려금 조정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납품업자들은 대규모소매업자와의 구조적인 거래상지위의 차이로 인하여 대규모소매업자가 정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자동 계약갱신으로 계약기간 중에는 판매장려금을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 납품업자들이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판매장려금 인상에 동의하여 피심인과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과 납품업자간에 체결된 이 사건 수수료 조정에 관한 합의를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합의로 보기는 곤란하다. 셋째, 피심인의 행위가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 계약기간 중 상호계약 변경사항에 대해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의 매장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3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1조제1항(서면계약체결의무), 제11조의2 제1항(부당한 계약변경 등 불이익제공의 금지)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치내용

피심인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에게 구매사유가 없는 유통기한 경과, 매출부진, 점포리뉴얼 또는 계절용품이 아님에도 계절용품이라는 이유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

거나 계절용품을 납품일로부터 정당한 기한을 초과하여 반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업자와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률을 인상하는 행위와 같이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법 위반 관련 납품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1. 24.

(주)영풍문고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0가유0611)

■ 위반내용

피심인은 2008. 4. 1.부터 2009. 6. 30.까지 (주)OO출판사 등 289개 납품업자와 “더위탈출! 책과 함께” 등 총 10회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당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사용용도·산출근거,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각각 당해 판촉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

피심인은 대규모소매업고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대규모소매업자’로서 2008년 기준 매출규모에 있어 오프라인서점 2위, 온라인서점을 포함한 전체 서점시장 4위의 유력사업자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체 유통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납품업자로서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피심인의 서점에서 자신이 출판한 서적을 판매할 경우 해당 상품의 인지도 및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따라서 피심인과의 거래관계 유지는 경영상 매우 긴요한 바, 피심인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심인은 납품업체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도서란 일반 소비재와 달리 대체재가 없는 상품으로서 특정 저자, 특정 출판사의 도서가 아니고는 소비자가 수요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특정도서를 발행하는 출판사와 거래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심인은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 저자 또는 도서에 대한 독자들의 선호로 인하여 해당 저자의 저작물이나 도서를 출판하는 납품업체가 피심인에 대하여 오히려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는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수많은 서적 중 일부에 한정되는 특별한 경우이지 이를 나머지 다른 납품업체의 도서에도 해당하는 일반적 현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오히려 자신들의 상품을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자체가 매출 증대 등 경영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 납품업체가 대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되는 판단이라 하겠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4. 1.부터 2009. 6. 30.까지 총 10회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당해 판촉행사의 명칭·성격·기간, 당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사용용도·산출근거, 예상이익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판촉행사일 이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켰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피심인은 2008. 4. 1.부터 2009. 6. 30.까지 OOO(OO서적 대표) 등 527개 납품업자와 신규거래를 하면서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거래기간, 납품방법·장소·일시 등 납품조건, 반품조건 등의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의 OOO 및 OOO의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신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

규거래품의서’, ‘신규계약업체 서면 계약현황’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피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4. 1.부터 2009. 6. 30.까지 000(00서적 대표) 등 총 527개 납품업자와 거래를 하면서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거래기간, 납품조건, 반품조건 등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거래기간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는 점, 납품조건을 확정하지 않는 것은 서점·출판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는 점, 한정된 공간에 서적을 다량 적재해야 하는 서점의 여건상 납품업자가 반품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심인의 위 행위가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대규모소매업고시는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거래기간, 납품조건, 반품조건 등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향후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피심인과 납품업자와의 거래상 지위에 비추어 납품업자가 피심인에 대하여 손해보전 요구 등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납품업자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 사실이 없다던가, 납품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등의 사유로 피심인의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아니 한다. 또한 피심인은 주로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직매입거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피심인 자신의 결정으로 상품의 매입 및 판매, 재고관리를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바, 서적 진열공간의 제약 등 피심인의 사정에서 발생한 반품부담을 납품업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피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 제2호에 위반되는 서면계약체결의무 위반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호 위반되어 각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치내용

피심인은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전체 판촉비용의 규모, 예상이익, 판촉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판촉행사일 이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은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해당 거래와 관련한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거래기간, 납품조건, 반품조건 등을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관련 납품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경품 고시

11. 24.

광동제약(주)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건 (2010서경1549)

■ 위반내용

피심인은 2010. 3. 1.~2010. 5. 30. (총 91일간)기간 동안 “탄생10년, 새롭게 탄생한 비타500 고객감사 대축제” 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사제품인 비타500의 뚜껑에 당첨 여부를 기재한 후 이를 구매한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할 것을 제의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이 자신의 상품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제공·제의한 경품류 중 YF소나타는 가장 고가로서 당첨자 1인에게 제공한 약 2,651만 원인 바, 경품류 가액이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 500만 원을 초과한다. 피심인이 자신의 상품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제공을 제의한 경품류의 총액은 약 270백만 원으로서 이는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3%에 해당하여, 이는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의해 제의·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총액한도인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208백만 원)을 초과한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치내용

피심인은 자신의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상의 방법을 통하여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법

11. 22.

현대빌트인(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0서건0945)

■ 위반내용

피심인은 2009. 2. 27. ○○종합설비(주)에게 '강남을지병원 리모델링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이하 "강남을지병원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하고, 2009. 8. 31.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한인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2010. 10. 30.) 이내에 ○○종합설비(주)에게 하도급대금 125,7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은 목적물 인수 후 60일이 지나도록 수급사업자인 ○○종합설비(주)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이에 대해 피심인은 신고인이 하도급계약상 하자보수보증증권, 준공관련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하도급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인 ○○종합설비(주)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피심인과 ○○종합설비(주) 사이에 하도급대금이 확정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설비(주)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고, 적어도 피심인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대금은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심인은 ○○종합설비(주)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25,700천 원 및 법정지급기한(2010. 10. 30.)을 초과한 날로부터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2009. 2. 27. ○○종합설비(주)에게 '강남을지병원공사'를 건설위탁하고, 2010. 1. 12.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 조정된 추가공사대금을 받은 후 법정지급기한인 추가공사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2010. 1. 27.) 이내에 ○○종합설비(주)에게 추가공사대금 127,64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

피심인은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 조정된 추가공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의 형태로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수급사업자인 성원종합설비(주)에게 하도급대금 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 이에 대해 피심인은 이 건 하도급계약이 설계시공일괄계약(Lump-sum Turnkey)조건으로 이미 계약 시점에 설계변경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인 ○○종합설비(주)는 계약시점에 설계변경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어 계약당사자 간에 계약내용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른 점, 하도급계약서의 대금지급조건에 의하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대금의 조정 및 지급을 받으면,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고,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건 현장설명서에도 설계변경 등에 따른 단가조정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은 ○○종합설비(주)에게 미지급한 추가공사대금 127,649천 원 및 법정지급기한(2010. 1. 27.)을 초과한 날부터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2009. 1. 13. ○○종합설비(주)에게 ‘경희대학교 동서신학병원 승강기증설공사’(이하 “경희대 병원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하고, 2009. 3. 25.~5. 31.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한인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2009. 7. 30.)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14,520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1,380 천 원($= 14,520천 원 \times (25\% \times 46일 / 365일 + 20\% \times 116일 / 365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은 목적물을 인수 후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이에 대해 피심인은 ○○종합설비(주)가 하도급계약상 하자보수보증증권, 준공관련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하도급대금 14,520천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종합설비(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 후 차액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인 ○○종합설비(주)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피심인과 ○○종합설비(주) 사이에 하도급대금이 확정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설비(주)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고, 준공관련도서에 대한 제출이 지연이자 지급보다 반드시 선이행 내지 동시이행 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받은 후에 발행하는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심인은 ○○종합설비(주)에게 법정지급기한(2009. 7. 30.)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1,380천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종합설비(주)에게 건설 위탁한 위 ‘강남을지병원공사’와 관련하여, 2009. 2. 17.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598,800천 원을 지급받고, 그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선급금 126,500천 원을 법정지급기한인 건설위탁한 날로부터 15일(2009. 3. 14.)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126천 원($= 126,500천 원 \times 25\% \times 13일 / 365일$)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종합설비(주)에게 건설위탁하기 전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건설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종합설비(주)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법정지급기한보다 13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 바, 이는 하도급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심인은, ○○종합설비(주)에게 선급금사용계획서, 세금계산서, 선급금이행증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종합설비(주)가 선급금 이행증권만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를 지연제출하여 선급금의 지급이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종합설비(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합설비(주)가 선급금 지급기한 내에 선급금 이행증권을 제출하였고, 선급금사용계획서는 선급금지급보다 반드시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선급금 및 지연이자를

받은 후에 발행하는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심인은 ○○종합설비주에게 법정지급기한(2009. 3. 14.)을 초과하여 지급한 선금금에 대한 지연이자 1,126천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제3항의, 법 제13조 제8항의, 법 제6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위반되므로 각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조치내용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종합설비 주식회사에게 '강남을지병원 리모델링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건설 위탁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25,7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한 2009. 10. 31.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종합설비 주식회사에게 '강남을지병원 리모델링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추가공사대금 127,649,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한 2010. 1. 28.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종합설비 주식회사에게 '경희대학교 동서신학병원 승강기증설공사' 건설 위탁과 관련하여, 지연 지급한 하도급대금 14,52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 1,380,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종합설비 주식회사에게 '강남을지병원 리모델링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지연지급한 선금금 126,5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 1,126,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표시 · 광고법

11. 9.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10서소0974)

■ 위반내용

피심인은 2009. 6. 19. 파이낸셜신문, 중부일보, 자신의 홈페이지, 2009. 7. 17.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이 분양하는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소재 군포부곡휴먼시아 B-1BL, B-2BL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면서 모집 공고문 등에 군포부곡휴먼시아 B-1BL, B-2BL을 "정부의 2. 11. 경제활성화대책에 따라 세제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으로 표시 · 광고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전단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자신이 분양하는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소재 군포부곡휴먼시아 B-1BL, B-2BL을 세제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으로 표시 · 광고한 사실이 있다.

2009. 2. 11.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양도세 한시면제와 취 · 등록세 감면을 내용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사실이 있다. 양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제3항에 의거 2009년 2월부터 2010. 2. 11.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미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 60%가 감면되므로 미분양 주택으로 감면되는 세액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다. 피심인은 2009. 6. 19.과 같은 해 7. 19. 자신이 분양하는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소재 군포부곡휴먼시아 B-1BL, B-2BL을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정부의 2. 11. 경제활성화대책에 따라 세제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세제감면 혜택"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조례는 그 세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

제감면의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이 이 규정에 의해 자신이 분양하는 군포부곡휴먼시아 B-1BL, B-2BL에 대하여 그 소재지 자자체인 군포시로부터 미분양주택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주택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나, 군포부곡휴먼시아 B-1BL, B-2BL이 분양 공고된 2009. 6. 19. 이전까지 피심인은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이를 확인 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피심인이 2009. 7. 8. 경기도에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여부 질의’ 문서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군포부곡휴먼시아 B-1BL, B-2BL의 최초 분양 공고 시점인 2009. 6. 19. 이후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2009. 9. 23. 회신에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7조 제4항에 근거한 취/등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세관자(군포시)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답변하여 취득·등록세 감면여부를 군포시가 결정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심인은 2009. 10. 12. 군포시에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대상 관련 공문 이첩’ 문건을 통해 취득세·등록세 감면여부를 문의한 바, 군포시는 2010. 1. 11. 피심인의 군포부곡휴먼시아 B-1BL, B-2BL이 세제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비록, 피심인이 이 사건 광고대상물이 취득세·등록세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사실은 인정되나, 광고가 널리 게시된 2009. 6. 19. 이전에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후에도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고 공지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광고행위는 광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확인되지 않은 불명확한 내용을 광고한 사실이 있고 이후에도 그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 점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허위·과장성이 있다 할 것이다. 피심인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이 사건 광고표현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접하는 경우, 공기업인 피심인이 분양공고문에 명시한 이 사건 광고표현을 다수의 피분양자가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으로 피분양자는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이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는 미분양주택임을 당연 확신 할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군포부곡휴먼시아 B-1BL, B-2BL이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피심인이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이다.

우선, 2009. 2. 12. 기획재정부는 미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 구입시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씩 감면하는 대책을 발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가 각각 50%씩 감면되고 취득세에 연동되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기존 0.5%에서 0.05%로, 등록세에 연동되어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기존 0.2%에서 0.1%로 감면되게 된다. 이에, 군포부곡휴먼시아 B-1BL, B-2BL의 세제감면에 따른 피분양자 부담 세액을 비교해 보면, 피분양자가 세제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면 최저 분양가인 204,995천 원인 경우 3,177천 원을, 최고 분양가인 275,100천 원인 경우 4,264천 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근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이 속출함에 따라 주택분양을 촉진하게 위한 사업자간의 다양한 경쟁이 필요한 시점에서 세제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이라는 사안은 위의 세제감면 차액을 비교해 볼 때, 주택분양자들의 실질적인 구매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관련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시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허위·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치내용

피심인은 경기도 군포시 군포부곡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군포부곡휴먼시아 B-1BL, B2BL 아파트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위 아파트가 정부의 2. 11. 경제활성화대책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마치 세제감면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과 같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문판매법

11. 4.

(주)씨앤커뮤니케이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10특수0680)

■ 위반내용

피심인 씨앤클럽은 2006. 1. 9.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이 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의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지급하는 유선수당을 신설하였고, 2006. 4. 1.에는 20일 이상 상근 활동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는 브이아이피(VIP) 수당을 신설하였으며, 2006. 4. 25.에는 피심인 씨앤클럽의 다단계판매원 중 S등급의 다단계판매원들이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할 경우 지급하는 교육수당을 신설하였고, 2008. 3. 1.에는 일정등급(SM2 ~ GM1 등) 이상의 상위판매원들이 하위 판매원들을 지원할 경우 지급하는 서포트 수당을 신설하였다. 피심인 씨앤클럽은 이와 같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 씨앤클럽은 2006. 1. 9.부터 2008. 3. 1.까지의 기간 동안 유선수당, 브이아이피(VIP) 수당, 교육수당, 서포트 수당을 각각 신설하는 방법으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였다. 피심인 씨앤클럽은 2006. 1. 9.부터 2008. 3. 1.까지의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시점인 2009. 11. 4.까지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피심인 씨앤클럽이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총 4회에 걸쳐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피심인 씨앤클럽은 200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중개의 방법으로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합계액 9,152백만 원의 91.76%에 해당하는 8,398백만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 씨앤클럽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피심인 씨앤클럽 소속 직원명의의 확인서에 의할 때, 피심인 씨앤클럽은 200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총 8,398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 씨앤클럽이 제출한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 현황' 및 피심인 씨앤클럽 소속 직원명의의 확인서에 의할 때, 피심인 씨앤클럽이 200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은 9,152백만 원이다. 같은 기간 동안 피심인 씨앤클럽이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8,398백만 원으로,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91.76%에 해당하는 바,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인 35%를 현저히 초과한다.

피심인 씨앤클럽은, 별정통신사업자인 (주)씨앤클럽브이엔오는 자신이 (주)LG텔레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



공정위 주요 심결사례 >>

하여 설립한 형식상 회사일 뿐 실질적으로는 자신과 동일한 회사이므로, 이 사건과 관련한 피심인 씨앤컴의 매출액은 자신과 (주)씨앤эм브이엔오의 결합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 씨앤컴과 (주)씨앤эм브이엔오는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각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및 이사의 구성은 물론 회사의 목적도 다르다는 점에서 동일한 회사라고 볼 수 없으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심인 씨앤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씨앤컴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총액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한 피심인 씨앤컴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피심인 씨앤컴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할 책임과 자신의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내용을 수년간 신고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총액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심인 씨앤컴에게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53조 제1항 제4호와 제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고발하기로 한다. 피심인 이○○는 2007. 3. 14.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씨앤컴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직위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피심인 씨앤컴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책임과 피심인 씨앤컴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내용을 수년간 신고하지 않았으며, 피심인 씨앤컴의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심인 이○○에게 법 제53조 제1항 제4호와 제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고발하기로 한다.

피심인들의 위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고발에 관하여는 제54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고발에 관하여는 제53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치내용

피심인 주식회사 씨앤크뮤니케이션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음에도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 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 주식회사 씨앤크뮤니케이션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 주식회사 씨앤크뮤니케이션 및 피심인 이○○를 각각 고발한다.

■ 가맹사업법

11. 17.

(주)파리크라상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09가유4693)

■ 위반내용

피심인은 2008. 2. 4.~2009. 6. 30.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광주 ○○점 등 6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 전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10. 4. 6.자 '정보공개서 제공 관련 확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피심인은 전체 위반행위 62건 중 30건은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3일 또는 14일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14일에 대한 착오”와 “초일불산입이라는 민법 원칙을 몰랐기 때문”이고, 사업설명회 때 정보공개서를 비치하고 있어 사실상 숙려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어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가 전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체 위반행위 중 피심인이 주장하는 30건을 제외한 나머지 32건의 위반행위는 정보공개서 제공 전부터 제공 후 12일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14일에 대한 착오”와 “초일불산입이라는 민법 원칙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사실상 정보공개서를 비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거나 가맹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 제7조 제2항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도 않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치내용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